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서 윤 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1인가구가 점차

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

정비계획 수립 시 1인가구 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에

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안 제8조3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

정비계획 시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 범죄예방환경설계에

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을 통해 1인가구 밀집지역에 범죄 발생을 줄이고

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만들기
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
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